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 ·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53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체계	5
2. 총괄적 검토	7
3. 총칙	17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24
5.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33
6.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3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철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5. 31.

다.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이처럼 인공지능의 개발·이용이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생성 가능성도 큼.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ChatGPT 4.0 출시 이후 법률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고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규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단순한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 산업진흥과 규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이에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신뢰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2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를 마련하고, 고위험영역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 사실을 결과물에 표시하여야 함(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5개 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 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23.2.14.)한 안과 체계 및 내용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며, 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첫째,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
 - 둘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간사를 맡도록 하고 있음.
 - 셋째, 국가인공지능센터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인공지능 관련 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체계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3조(기본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 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 제6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기능)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제9조(전문위원회 등)
- 제10조(국가인공지능센터)
- 제11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 제12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제13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 제14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 지능산업 활성화

- 제15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
용 지원)
- 제16조(창업의 활성화)
- 제17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 제18조(제도개선 등)
- 제19조(전문인력의 확보)
-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 제21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 제22조(한국인공지능협회의 설립)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제23조(인공지능 책임성·신뢰성원칙 등)
- 제24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 제25조(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 등)
- 제26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 제27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지의무)
- 제28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
한 사업자의 책무)
- 제29조(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및 표시)
- 제30조(민간자율인공지능책임성위원
회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 제31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 제32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5조(벌칙)

2. 총괄적 검토

가. 개요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제조·물류·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확산으로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의 제작 및 창작과 판단·추론 등 과거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범위까지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사회 난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편견이나 허위 정보의 확산,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모두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흥 규정과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규정을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함.

나. 해외 입법 동향

(1)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 13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켰음.
- EU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을 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설정함.
 - ‘수용 불가능한 위험’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잠재의식 또는 취약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개인의 사회적 점수 (social score)를 도출하는 시스템, 자연인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평가하는 시스템 등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의 사용은 금지됨.
 - ‘고위험’ 인공지능은 자연인의 생체 인식·분류, 도로·수도·가스 등 중요 인프라의 관리·운영,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 및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인공지능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제공·배포하는 자는 적합성 평가, 품질 관리 시스템 운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제한된 위험’ 인공지능은 의사결정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인공지능 시스템, 수신 문서 분류·중복 탐지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등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배포하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함.

- ‘저위험’ 인공지능은 위의 세 종류의 인공지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공지능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EU 인공지능법은 수용 불가능한 위험과 고위험·제한된 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수용 불가능한 위험의 인공지능을 사용한 자에게는 3,500만 유로(약 500억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 고위험·제한된 위험 인공지능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1,500만 유로(약 220억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의 3%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EU 인공지능법의 인공지능 단계별 규제>

구분	유형	규제
수용 불가능한 위험	- 인간의 잠재의식 또는 취약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 개인의 “사회적 점수(social score)”를 도출하는 시스템 - 자연인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평가하는 시스템 - 직장 및 교육 기관에서 자연인의 감정 추론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일부 예외 허용: 납치, 인신매매, 성적 착취 피해자 및 실종자 수색/테러 위험 방지범죄자와 범죄 혐의자 신원 및 위치 파악) 등	○ 사용 금지

구분	유형	규제
고위험	- 자연인의 생체 인식·분류 - 도로, 수도, 가스 등 중요 인프라의 관리·운영 - 교육 및 직업훈련 - 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 - 필수 민간서비스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혜택 향유 - 법 집행 - 이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 - 사법행정 및 민주적 절차	○ 제공·배포자 의무 - 기본권 평가 - 적합성 평가 - 품질 관리 시스템 보유 - AI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보관 -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 의무 등
제한된 위험	- 의사결정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AI 시스템 - 수신 문서를 분류하는 AI 시스템 - 애플리케이션 간 중복 탐지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등	○ 투명성 의무
저위험	- 그 밖의 AI 시스템	○ 별도의 규제 없음

출처: 국회도서관 입법정보회답, 2024.4.

(2) 미국

○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는 구글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마련하여 왔음.

○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23년 10월에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임.

- 해당 행정명령은 안전 및 보안, 혁신 및 경쟁, 근로자 지원,

인공지능의 편향 및 시민권에 대한 고려사항 등 총 8개 정책 영역에 걸쳐 미국 연방 50여개 기관에 1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지침과 조치사항을 명시함.

<미국 행정명령 정책영역별 주요 의무요건 지침>

정책영역	의무요건	책임기관
안전 및 보안	-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안전 및 보안을 개발 및 배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범관행 및 테스트 환경 개발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립과학재단)
혁신 및 경쟁	- AI 교육 또는 일자리를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
근로자 지원	-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경제자문위원회
인공지능 편향 및 시민권에 대한 고려사항	- 기관 및 규제기관을 소집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관련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각자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논의	법무부
소비자 보호	- 보건복지부 AI 전담반 설립	보건복지부 (국방부, 보훈부)
개인정보보호	- 기관에서 조달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파악	관리에산국
연방기관의 AI 사용	- 연방기관의 AI 사용에 관한 부처 간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장 역할 수행	관리에산국
국제관계 리더십	- AI 기준 수립의 추진 및 개발을 위한 글로벌 추진 계획 수립	상무부

출처: 오유빈,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국회도서관, 2024.1.4.

다.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

- 현재 인공지능 제정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제정안이 EU의 인공지능법에 비해 규제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 규제 수준도 미흡하므로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시민사회단체¹⁾는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여야 하나, 제정안은 EU를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고 규제 수준이 미흡하며, 이용자 및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권리 보호 및 규제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의 의견을 제시 하였음²⁾.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 및 이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기관의 사전점검 및 사후조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³⁾.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2)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4.7.1.

○ 반면,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이며, 글로벌 시장 선점이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외 사례에 따른 규제 보다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상황에 맞는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EU의 규제 중심의 인공지능법 제정은 역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역내 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미·중 간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행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EU와 같이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음.

-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업계는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법규를 제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전체적으로 제정법안은 규제와 관련하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흥 및 자율 규제 중심의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임.

3) 국가인권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23.7.13.

- 한편, 제정안 전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고위험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경우 벌칙·과태료 등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 ② 금지되는 인공지능 규정, 이용자 설명요구권, 분쟁조정제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⁴⁾.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①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립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 ② 이용자 설명요구권, 분쟁조정제도 등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은 주요국에서도 아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실제 도입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국가정보원**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권고, 신뢰성 검·인증 지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수립·보급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위협에 대한

4)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칭)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법안」 제정을 추진 중임.

예방·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서 인공지능 보안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국정원이 수행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하는 국가·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단서 조항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내용 및 전문위원회의 역할에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생태계 및 창작자 권리 보호와 학습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EU 인공지능법의 경우⁵⁾와 같이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인공지능법에서 작성

5) 제53조(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의 의무)

1. 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d) 인공지능사무국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는 콘텐츠에 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작성하고 공개한다.

하도록 하는 상세한 요약본의 내용 및 서식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곤란하며, EU 외 다른 국가의 동향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사업 지원·추진 및 관련 시책의 수립,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외 타 부처에서도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주체를 ‘정부’로 확대 또는 관계기관장과 협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기타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은 이하의 조문별 검토에서 논의함.

3. 총칙(제1장)

가. 정의(제2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등에 대하여 정의함.

(2) 제정안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자율성을 가지고 외부의 환경 또는 입력에 적응하여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알고리즘”이란 문제의 해결, 업무의 수행 또는 장비·장치·기기 등의 운용을 위하여 기술(記述)된 연산, 규칙과 절차명령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마. 생체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바. 채용, 신용등급평가,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아. 공공기관 등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결정 또는 비용 징수 등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을 수정, 개량 또는 변형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다만, 제8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다.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 제2조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등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특히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제정안에 따른 규제의 대상 및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므로, 이하의 관계부처 의견 등을 참조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 환경부는 ‘에너지,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먹는물 공급과 관련된 기술의 분야가 광범위하고 먹는물

관련 기술들이 모두 고위험영역인 것은 아니므로⁶⁾,

물을 먹는물로서 음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생산 공정’에 한정하여 고위험 영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생체정보⁷⁾’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동법 시행령의 ‘생체인식정보’와 유사한 내용으로⁸⁾,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율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법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관련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뒤, 개별법상 추가적으로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경우 추후 개별법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⁹⁾.

6) 예를 들어 지하수 측정망, 먹는샘물 자동계측기 등의 기술은 지하수 수위, 수질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고위험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7) 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9) EU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인공지능법에서 생체정보 등 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고, 사실상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대부분의 영역에 해당할만큼 광범위하므로 실제 위험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콘텐츠’, ‘콘텐츠 제작’과 유사한 개념으로 법률상 중복이 우려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¹⁰⁾.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텐츠 제작’은 인공지능 기술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제정안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명백히 구별된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의에서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제품 및 서비스가 사실상 생성형 인공지능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개인정보, 저작권,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다른 관계법을 따르도록 함.

(2) 제정안 조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검토사항

- 안 제4조는 제정안이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회 등과 관련하여 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되, 다만 개인정보, 저작권,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관한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기본법의 경우 다른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법률을 따르므로, 우선 적용되는 분야를 개별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에 관하여는 기존 법령인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국가정보원**은 국방·국가안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인공지능법¹¹⁾과 유사하게 인공지능을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1) 제2조(적용범위)

3. … 이 규정은 군사, 국방 또는 국가안보의 목적으로만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하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제2장)

가. 위원회의 설치(제6조 등)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인공지능윤리·신뢰성 관련 연구 및 관련 자문·사전검토 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대통령 소속
- 40명 이내 (정부, 민간, 과기수석)
- 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간사: 과기수석
- 정책 수립, 권고·의견표명 권한 등
- 전문위원회 설치 가능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

- 관련 연구, 자문·사전검토 등

(2) 제정안 조문

제6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

고,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인공지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국가기관 등,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권고 등을 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 및 임직원,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의 진술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권고 등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감사위원 1명을 두며, 감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⑩ 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⑬ 그 밖에 위원회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안전성 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국민생활의 변화와 적응 및 안전한 이용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책임성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9. 제6조제6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10. 고위험 인공지능의 규율에 관한 사항
11. 고위험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규율에 관한 사항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4. 그 밖에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나 자문

또는 위원장이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청하는 연구·자문·검토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이하 “신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자문·사전검토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검토

③ 전문위원회(신뢰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은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두고 있고¹²⁾,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포함될 수 있기는 하나,
 인공지능의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인공지능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한편, 관계부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 중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심의위원회에서 규율·심의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2)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 5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7.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 7의2. 제27조의4에 따른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 중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내용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¹³⁾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지원단을 두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¹⁴⁾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문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에서 위원회 사무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단 설치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¹⁵⁾.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뒷받침하는 별도 지원조직이 시급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주요 자문위원회¹⁶⁾ 및 그간 신설된 주요 민관합동위원회¹⁷⁾도 상설지원조직을 두고 있다는 입장임.

13)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4)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나 별도 사무기구 설치 없이 우주항공청에서 사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임.

16)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1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

나.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안 제10조 및 제11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둠.
- 인공지능안전 확보 관련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둠.

(2) 제정안 조문

제10조(국가인공지능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등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4. 인공지능윤리의 확산과 실현,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교육·인식개선 및 홍보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으로 인한 국민 안전, 인권 등에 대한 위험요인의 조사·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6.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사회·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7.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8.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분석

2.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방법 연구

3.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직의 설치·운영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글로벌 추세에 비추어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무부 소속으로 AI 안전성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영국은 과기혁신부 소속,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소속으로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안전 관련 조직이 신설되는 추세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에 따른 경우 공공기관 양산이 우려되며 제정안의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규정은 새로운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 내지 출연연 내 조직을 인공지능정책센터 및 안전연구소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 감축기조와 무관하다는 입장임.

5.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제3장)

가.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안 제13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의 제·개정, 폐지와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제정안 조문

제13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은 인공지능기술과 제품·서비스의 원활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이 표준의 제·개정 및 보급 등 표준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의 표준화 사업의 주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표준화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⁸⁾, 「산업표준화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⁹⁾.

- 또한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의 협력체계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18)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9)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있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²⁰⁾ 및 「가상융합산업 진흥법」²¹⁾ 또한 표준화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하고 있다는 의견임.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²²⁾, 「정보통신융합법」²³⁾,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²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체를 과기정통부장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0) 제15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개발과 제정·개정 및 폐지. 다만, 「산업표준화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조사·보급·확산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제13조(표준화)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22)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3) 제16조(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24)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6.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제4장)

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고지 등(안 제26조 등)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과기정통부장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서비스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제정안 조문

제26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①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지의무) ① 고위험영역인공지능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고위험영역인공지능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8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개발사업자 또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의 수립·운영
2.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자연인의 관리·감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서 심의·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제정안은 인공지능 중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의 의무에는 ①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와, ② 위험관리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운영 등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가 포함됨.
-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EU, 미국 등 인공지능 규제 관련 해외 동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신체·권리 등에 대한 위험, 규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및 관련 산업·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의 악의적 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보급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정원이 국가·공공기관 대상 예방 및 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공공기관이 개발·이용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국정원이 수립·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안부의 소관사항으로서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정안에 단서 조항 추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사무와의 연관성, 부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의 알고리즘 투명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의 경우 기존 방통위가 수행해오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방통위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분야 기획·진흥·표준화 등의 업무를,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분쟁조정, 평가·교육

등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방통위가 수행해오던 방송통신 심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인터넷 윤리교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임²⁵⁾.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은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하여 온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이며²⁶⁾,

인공지능 신뢰성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게재·유통되는 정보의 유해성으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방통위 소관의 이용자 보호와 구분된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제정안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해당

25)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인공지능 분야의 윤리 기준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추진(사이버윤리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⑫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추진

21.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평가체계의 구축·운영 (사이버 윤리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2. 인공지능 윤리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여부가 과기정통부장관의 개별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② 사실상 모든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에 고지의무 및 신뢰성
·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및 표시(안 제29조)

(1) 제정안 요지

-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2) 제정안 조문

제29조(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및 표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생성된 사진·영상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²⁷⁾,
생성형 인공지능 및 이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 전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없음²⁸⁾.

○ 이에 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전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고지·표시의무를 규정
하고 있음.

○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종류 등에 따라
적절한 표시방법이 상이할 수 있고,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²⁹⁾ 등 표시의무 이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표시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공직선거법」 또한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7)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
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
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28) 다만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713호,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29) 사진, 음성, 영상 등에 저작권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 암호를 부호
화하여 숨겨 놓은 것으로, 최근 구글은 AI가 생성한 영상과 텍스트에 신스ID(SynthID) 디지털
워터마크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생성물과 관련하여 디지털 워터마크 적용이 확산
되는 추세임.

- 해외 사례를 보면, EU 인공지능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생성·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검증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인증 및 워터마크 지침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구글, 오픈AI 등 7개 기업³⁰⁾은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정부와 합의 하였음³¹⁾.
- 한편,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표시의무의 대상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분야 및 분야별 표시 내용·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콘텐츠 제작 방식 및 인공지능의 제작 기여도 등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콘텐츠 산업 실정에 맞게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내용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법에서 인공지능 일반에 대한 규율을 두고, 산업별로

30)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인플렉션, 앤스로픽

31) 이승환,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국회미래연구원, 23-15호.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또한, 콘텐츠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수요기업에 해당하여 제정안의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시의무 부과 필요한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개별법을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②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의무의 관리·감독은 이용자 보호 및 온라인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가 수행하여야 하며, ③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의무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방통위가 추진중인 「(가칭)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안」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①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② 인공지능 사업자 대상 규율은 정보통신망 게재·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국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주무부처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③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고지의무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의무는 명백히 구별되는 내용으로, 글로벌 동향을 고려할 때 선거 등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표시의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생성된 결과물의 유형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고 법적 실익도 불분명하므로 실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